

朝鮮 漂流民에 대한 明의 救助體制

- 중국표착 제주 표류민을 中心으로 -

*王天泉

* 濟州國際大學
中國語言文化學科 教授

1. 머리말
2. 중국에 표착한 제주 표류민의 장기 지속성
3. 제주 표류민에 대한 明의 구조체계
4. 맺음말

[국문요약]

표류는 한중 해상왕래의 특수한 통로였다. 최근 10-20년 동안 동아시아 교류사에 관한 연구에서 학자들은 점차로 표류를 교류의 특수한 형태의 하나로 연구할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였다.

제주도는 표류의 섬이었다. 절해고도인 제주도는 동아시아 해역의 표류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제주와 관련된 표류사건은 한중 표류연구에서 매우 풍부한 역사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제주에서 발생한 표류사건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표해 기록에 관한 연구 중에서 제주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제주가 표류사건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지위를 고려해볼 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특히 표류 구조의 제도적 측면에 대한 전면적 고찰이 부족하다.

본고는 주로 명대와 조선조 제주와 관련된 표해록과 표류에 관한 기록들을 통해서 명대의 조선 표류민에 대한 구조방법, 조사절차, 주관기관 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중국이 명대부터 조선과 주변 나라의 표류민에 대한 구조가 제도화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 명대 이전에도 당연히 표류민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였을 것이나 본고에서는 시기를 좁혀서 명대를 대상으로 삼았다.

표해록을 통해서 본 심문 절차와 주관기관은 명대 이전에도 실시되었으나 명대에 이르러 보다 분명하게 제도화되었으며 적어도 그 定例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封建王朝 시대에는 정례를 통해서 고정되어 온 방법을 제도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표류민의 구조방법과 구조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정치·군사·외교·문화심리 등 다방면에서 그 당시 한중 사회와 한중관계를 이해하는 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1. 머리말

한중 양국 사이의 해상왕래는 고대로부터 있어왔지만 특히 宋代에는 어느 시기보다 활발하였다. 明代에는 항해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해상 활동이 예전에 비해 훨씬 빈번해졌다. 한중간의 해상왕래, 특히 민간왕래가 계속되면서 해난사고로 인한 표류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였다. 표류는 항해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면서 한중 해상왕래의 특수한 통로가 되었다.

최근 10-20년 동안 동아시아 교류사에 관한 연구에서 학자들은 점차로 표류를 교류의 특수한 형태의 하나로 연구할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자 한다. 일본학자들의 표류사건에 대한 연구는 琉球와 중국의 표류사건으로부터 시작하였다. 松浦章은 문헌자료의 발굴과 명대의 해상 조공로 연구, 玉河館 위치의 고증 등에 대한 연구로 학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대만 학자인 湯熙勇과 劉序楓은 표류민과 해난 救助의 제도적 측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많이 해 왔다. 湯熙勇의 연구는 주로 청대의 표류민 구조에 대한 제도에 주목하고, 그것도 대만 해역 혹은 대만과 관련된 해역의 표류사건 연구에 집중되었다.

한국의 표류연구는 표해록, 즉 표류문서를 통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며 그 효시는 역시 최부의 표해록이다. 표해록 연구로는 먼저 한문으로 씌어진 원전의 교주와 번역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는 표해록에 반영된 당시의 중국 사회와 정치 등 각 측면의 양상에 집중되었다. 박원호의 『崔溥漂海錄研究』는 최부의 『표해록』에 관한 연구 저서 중 비교적 전면적인 저작으로, 『표해록』의 판본, 교감 등의 방면에서 더욱 자세히 논술하였다.¹⁾ 김재선은 최부의 『표해록』을 통해서 명대 남북 수로의 교통, 소주, 항주 지역의 경관 등 많은 영역의 내용을 고찰하였다.²⁾

절해고도인 제주도는 동아시아 해역의 표류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

1) 박원호, 『崔溥漂海錄研究』, 고려대학교출판부, 2006, 350쪽.

2) 金在先, 『漂海錄中明弘治年間之蘇州景觀』, 『第九屆中國域外漢籍國際學術會議論集』, 1994; 같은 저자, 『崔溥漂海錄與明代弘治年間之杭州地區景觀』, 『中國社會史學會第五屆年會』, 1994.

하였다. 風多是 제주도의 중요한 기후 특징의 하나로 표류 발생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제주도 주변의 대표적인 해류인 서태평양의 난류인 흑조도 표류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였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표류의 섬’이 되었다. 제주와 관련된 표류사건은 한중 표류연구에서 매우 풍부한 역사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제주에서 발생한 표류사건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표해 기록에 관한 연구 중에서 제주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제주가 표류사건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지위를 고려해볼 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특히 표류 구조에 관한 제도적 측면에 대한 전면적 고찰이 부족하다.

湯熙勇은 明代의 표류민 처리방법에 대해 “사건별로 처리하였으며 清代의 康熙 乾隆대에 와서 비로소 표류민에 대한 구조제도가 점차 형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³⁾ 그러나 본고는 표해록에 관한 문헌기록을 통해서 제주의 표류사건을 중심으로 명대의 표류민에 대한 구조제도 양상과 의미를 고찰하고 湯熙勇과는 달리 명대에 이미 해난 구조의 제도화 혹은 정례화가 형성되었음을 밝혀내고자 한다.

연구 자료는 주로 조선시대의 표류에 관한 기록들이다. 예를 들어, 최부의 『漂海錄』(1488년), 이방익의 『南遊錄』(1797년), 최두찬의 『乘槎錄』(1800년), 김배희(1471년)와 이섬(1483년)과 김기손(1534년) 등의 『漂流行錄』 등이다. 이밖에 『朝鮮王朝實錄』과 『通文館志』와 『通文會考』 등 정부 문서의 기록 또한 본고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중국 표류에 관한 기록은 주로 明·清 시대의 會典과 實錄 등 공문서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명대 王在晉의 『越鐫』과 『海防纂要』, 鄭若曾의 『籌海圖編』은 조선 표류민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張瀚의 『松窓夢語』 등 역사 수필에서도 이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 이러한 중국의 개인저서들도 대조 자료로서 본고의 연구 자료에 포함된다.

3) 湯熙勇, 「清順治乾隆時期中國救助朝鮮難船及漂流民的方法」, 『明代漂到中國的朝鮮船－明清時代中國與朝鮮的交流』, 樂學書局, 2002, 98쪽.

2. 중국에 표착한 제주 표류민의 장기 지속성

옛날부터 제주는 동아시아 해역에서의 표류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표류민과 난파선에 관한 기록에서 제주라는 지명이 출현하는 빈도가 높으며 宋代에 이미 고려[제주]인들이 중국에 표착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과거 嘉佑 연간에 고려에 臣屬된 毛羅島 사람이 돛대가 부러져 표류되어 연안에 도착한 뒤 蘇州의 昆山港에 이르렀다.”⁴⁾ 그러나 기존의 자료로 볼 때 표류민의 송환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록이 부족하기 때문에 宋代에 표류민에 대한 救助제도가 체계화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본고에서는 明代를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다. 그 이유는 주로 이 시기에 한중 양국의 해상활동이 매우 활발하였으며, 해난사건과 이에 관한 기록도 예전에 비해 풍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대가 그다지 멀지 않아서 남아 있는 자료도 자세하고 동시에 표류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따라서 한중 양국 해난 구조제도가 점차 완비되고 확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明代에 조선 표류민이 중국까지 표착한 해난사건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朝鮮王朝實錄』과 『大明實錄』 등에 기록되어 있는 비교적 중요한 표류 사건을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1〉 명대에 중국에 표착한 조선(제주) 표류민

번호	연대	표착지	인원	표류 원인	송환 방식	출처
1	宣德五年 (1430)	不詳	朝鮮民 白隆(白龍) 等十七人	浮海市鹽	直接遣返	『宣宗實錄』(明) 卷68, 5年 9月 己未 『世宗實錄』(朝鮮) 卷49, 12年 7月 乙卯
2	正統十二年 (1447)	不詳	朝鮮國漂海軍 洪承龍等十三人		不詳	『英宗實錄』(明) 卷158, 9月 辛亥

4) “昔嘉佑中，高麗臣屬毛羅島人，檣摧桅折，風漂抵岸，至蘇州昆山港. (서인범·주성지 옮김, 최부, 『표해록』, 한길사, 2004, 3월 23일조).

3	正統十二年 (1447)	不詳	金元等十三人		隨聖節使 回國	『世宗實錄』(朝鮮), 29年 12月 丙戌
4	景泰四年 (1453)	浙江	濟州旌義縣水軍 文吞支等五人 (謊稱漁戶)	捕漁 遭風	隨聖節使 回國	『英宗實錄』(明) 卷232, 8月 丁亥 『端宗實錄』(朝鮮) 卷7, 魯山君 癸酉 9月 甲戌
5	天順六年 (1462)	不詳	朝鮮國人有浪海		隨千秋使 回國	『英宗實錄』(明)卷347, 12月 癸酉 『世祖實錄』(朝鮮) 9年 正月 甲寅
6	成化元年 (1465)	不詳	濟州金迥豆 ⁵⁾ 等十四名			『世祖實錄』(朝鮮) 卷37, 11年 9月 丙午
7	成化六年 (1470)	浙江	濟州金杯廻 等七名	押送貢物 回還	隨聖節使 歸國	『成宗實錄』(朝鮮) 2年 正月 庚辰
8	成化十九年 (1483)	揚州 長沙鎮	濟州旌義縣監李邇 與訓導金孝胖等 四十七人	遞任兼送 進上貢馬	隨千秋史 回國	『成宗實錄』(朝鮮) 14年 8月 庚午
9	弘治元年 (1488)	浙江 台州	濟州推刷敬差官 崔溥與同舟 四十三人	奔父喪 還家	派員 送還	『成宗實錄』(朝鮮) 19年 4月 戊申
10	弘治元年 (1488)	登萊	覆舟之朝鮮人		舟楫資送 還本國	『孝宗實錄』(明) 卷18, 9月 癸亥
11	弘治七年 (1494)	福建 漳浦	朝鮮國海南夷 十一人	捕漁遭遇 颶風	隨本國貢使 歸國	『孝宗實錄』(明) 卷92, 9月 壬子
12	正德四年 (1509)	浙江 松門衛	朝鮮國漂流民 十一名	乘舟過別 島貿販		『武宗實錄』(明)卷53, 8月 壬戌 『中宗實錄』(朝鮮) 4年 閏9月 戊辰
13	正德六年 (1511)	浙江 定海	濟州國夷人 安孫	航海 遭風	遣人伴還 本國	『武宗實錄』(明) 3月 乙丑 『中宗實錄』(朝鮮) 6年 7月 庚申
14	正德六年 (1511)		濟州高致江 等十七人			『中宗實錄』(朝鮮) 6年 6月 甲申

5) 松浦章의 『明清時代中國與朝鮮的交流 - 朝鮮使節與漂着船』에서는 ‘金迥豆’로 표시되어 있다(樂學書局, 2002, 98쪽).

15	正德七年<표 1> 명대에 중국에 표착한 조선(제주 표류민 1512)	南京地方 海孟縣	濟州正兵金一山等九人		隨聖節使 回國	『中宗實錄』(朝鮮) 卷17, 7年 10月 丙寅
16	正德14年 (1519)		中朝刷還濟州 漂流人十七名			『中宗實錄』(朝鮮) 卷36, 14年 9月 壬寅
17	嘉靖六年 (1527)	浙江 定海	朝鮮國遭風夷人 李根(濟州人) 等十七人 ⁶⁾		詔送 遼東 遣歸國	『世宗實錄』(明) 3月 癸巳 『中宗實錄』(朝鮮) 22年 6月 己未
18	嘉靖 十三年 (1534年)	江蘇 淮安 萬戶道	濟州漂流人 金 紀孫(萬珠) 等十二人	自濟州載 身 貢 發 船. 至 楸 子 島. 遭 風 漂 流	遣人 送還	『中宗實錄』(朝鮮) 卷78, 29年 11月 丙戌
19	嘉靖二十一年 (1542)	浙江 普陀	朝鮮夷人梁孝根 等二十二名	入貢遭風 漂流	詔給傳護 送回國	『世宗實錄』(明)卷263, 6月 己丑
20	嘉靖二十一年 (1542)		濟州高銀遷 等五十多人		遼東鎮撫 李時等押 率送至王 京	『中宗實錄』(朝鮮) 37年 8月 庚寅
21	嘉靖二十一年 (1542)	遼東	濟州漂流民李介 叱同等二十一名		遼東巡撫 派鎮撫宋 琛, 百戶吳 璧 護送回國	『中宗實錄』(朝鮮) 卷99, 37年 8月 丙申
22	嘉靖二十二年 (1543)	通州 海門	朝鮮國民 洪斌等四十二人	航海遇風	遣官 護送回國	『世宗實錄』(明) 卷275, 6月 丙子
23	嘉靖二十四年 (1545)	上海縣	朝鮮國夷人金玷 等十一人	航海遭風	恤而遣之	『世宗實錄』(明) 卷310, 7月 丁亥
24	嘉靖二十四年 (1545)	不詳 (琉球)	濟州漂流民朴孫 等十二人		冬至使 押 來	『明宗實錄』(朝鮮) 1年 12月 癸卯

6) 遣僉知中樞府事金瑚, 如京師, 謝恩. (前者, 濟州人李振等十七名, 漂至上國, 而刷遣, 故遣是使). 침지중추부사 김호를 명나라 서울에 보내어 사은하였다. (전번에 제주 사람 이진등 17명이 표류되어 명나라에 이른 것을 돌려보냈으므로 이 사신을 보낸 것이다.) 李振은 李根의 오류인 것 같다. (『中宗實錄』, 권59, 중종 22년 7월 癸未).

25	嘉靖二十六年 (1547)	不詳	遼東委官江潮 通事康鎮等. 齋漂 流入金萬賢等解 送移咨. 到義順館		遼東都司 派官送回	『明宗實錄』(朝鮮) 卷6. 2年 11月 丁亥
26	嘉靖三十年 (1551)	淮安	朝鮮夷人 管令金等八人	航海遭遇 颶風	詔恤而 遣之	『世宗實錄』(明) 卷373, 5月 己酉 『明宗實錄』(朝鮮) 7年 正月 乙酉
27	嘉靖三十三年 (1554)		濟州漂流人七名		隨聖節使 回國	『明宗實錄』卷17, 9年 10月 丁亥
28	萬曆四年 (1576)	淮安府 東甌山	朝鮮國進貢夷使 (濟州人) 梁俊 等二十二名	進上貢物	賞給衣履 押回	『神宗實錄』(明) 卷49, 4月 丁亥 『宣祖實錄』(朝鮮) 9年 6月 庚寅
29	萬曆八年 (1581)	應天	朝鮮國漂流夷人 梁成貴等二十餘 人		各給衣履 差官送回	『神宗實錄』(明) 卷150, 10月 丁酉
30	萬曆三十八年 (1600)	福建	呂宋人壹葉乃等. 西番人捌襄等. 朝鮮人壹參別等. 大郎等八倭人.		安置 柔遠驛	『神宗實錄』(明) 卷474, 8月 壬寅
31	萬曆四十年 (1612)	浙江	朝鮮國人 李大等七人		驛送至京 遇使臣順 帶或令遼 鎮差官 携發還國	『神宗實錄』(明) 卷492, 2月 辛巳
32	崇禎十一年 (1638)	遼東 石城島	崔守南等八名	安州赴 朝鮮京城 途中遭風		『明清史料』乙篇三, 二二七, 二三四丁

* 표에 이탤릭체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제주인의 표류사건이다.

松浦章의 『明代漂到中國的朝鮮船』⁷⁾에서 그가 들었던 20여건의 표류 예
중에서 10건 이상이 제주도로부터 온 선박이었다.⁸⁾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7) 松浦章, 『明代漂到中國的朝鮮船』, 『明清時代中國與朝鮮的交流－朝鮮使節與漂着船』, 樂學書局, 2002, 77-92쪽.

8) 松浦章은 『明代漂到中國的朝鮮船』이라는 글에서 그가 들었던 20여건의 표류 예 중에서

한중 양국의 사료를 비교하면 <표 1>에 나오는 32건의 표류사건 중 제주에 관한 것이 18건이나 된다. 그리고 김동전이 정리한 제주에 표류한 자료의 통계를 보면 朝鮮朝 世祖 14년(1468)부터 憲宗 7년(1841)까지 제주인이 중국에 표착한 사건은 23건으로, 동시기에 일본(15건)과 琉球(9건)에 표착한 사건의 총합과 같다. 물론 실제 발생한 숫자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제주와 중국 사이의 표류 발생 빈도가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제주도는 “표류의 섬”이라고도 칭해졌다.

중국에 표착한 제주표류민이 장기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문헌에서 확인된다는 사실은 제주민의 중국표착이 일상적이라는 뜻이다. 그만큼 한중관계, 특히 제주도와 중국 관계에서 표류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제주민이 중국을 경험하는 경우는 표류 이외에는 거의 드물었으며, 반대로 중국 남부사람들이 제주민을 직접적으로 접하는 경우도 표류 이외에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표류는 중국과 제주 간의 단절적인 상황 속에서 전개된 문화사적 교류의 통로로 인식되며, 그것이 우연에 의한 것이었다고 해도 장기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문화사적 축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음 장에서는 <표 1>에서 제시한 사례들을 포함하여 표류민에 대한 구조체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3. 제주 표류민에 대한 明의 구조체계

1) 표류민에 대한 조사과정과 주관 기관

弘治 元年(1488)에 崔溥 일행 43명을 태우고 제주를 출발하여 전라도 해남으로 향하던 배가 표류하여 중국 절강성 해안에 표착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제주도의 5건이 가장 주목을 받았다고 말했지만 필자가 『朝鮮王朝實錄』을 찾은 결과 10건 이상이 제주도로부터 온 선박이었다.

9) 주강현, 『표류의 섬』, 『제주기행』, 웅진지식하우스, 2011, 324-349쪽.

崔溥의 『漂海錄』에 근거해 일련의 조사과정과 심문 내용을 중심으로 표를 작성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최부 일행에 대한 조사과정과 심문 내용

조사 절차	조사시간	조사 지점	조사관청 및 관리	조사방식	조사내용
제 1 단계	윤1월 19일-20일	桃渚所	桃渚所千戶陳華等 (五品或從五品)	공식조사	선박수량, 왜구 여부, 성명, 신분 등.
			把總官先行差來官人薛旻	비공식 조사	조선왕의 황제 자칭여부, 관원들의 요대 품계, 금·은 생산 여부 등
제 2 단계	윤1월 21일	桃渚所	把總松門等衛備倭指揮 同知 劉澤(從三品)	공식조사	관아심문, 표류과정, 과거급제 연도 역임한 관직, 거주 지역, 무기 휴대 여부, 선박 수량 등.
제 3 단계	2월 4일	紹興	浙江總督備倭署由都指揮 僉事黃宗(正三品), 巡視海道副使吳文元(正 四品), 布政司分守右參議陳潭 (從四品)	공식조사	성명, 원적, 관직, 표류과정, 무기휴대 여부, 조선역사, 지리, 인물, 풍습, 제도 등.
제 4 단계	2월 7일-8일	杭州	鎮守太監張慶 巡按御使暢亨	관리과건 조사	조선의 문신 鄭麟趾, 申叔舟, 成三問 등의 관직, 활·검 등 검사
			按察提調學校副使 鄭大人與一大人	비공식 조사	담화, 조선의 과거, 경서

이를 통해 살펴보면 표류민에 대한 심사의 절차는 네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제1단계 崔溥 일행은 해방 일선의 장병에게 붙잡혀 所혹은 鎭으로 押送되었고 이 곳에서 첫 심문을 하였다.

제2단계 衛級인 把總官 혹은 그와 상당한 등급인 관리가 재심문하였다.

제3단계 省級인 군사 장관(備倭都指揮와 總兵 혹은 동등 관리)이 재심사하

였다.

마지막 제4단계에는 성급 최고위의 군사와 행정 장관인 鎮守나 巡撫 등에 게 보냈고 刑獄을 掌管하는 巡按御使와 같이 심사해서 公文書를 내리고 수도인 京師로 이송하였다.

앞의 3단계는 모두 備倭官員들이 주로 진행하였으며 비교적 격식을 갖추어 표류인을 관청으로 불러 심문을 하였다. 제4단계는 단지 詢問과 재심사만 하였는데 형식도 비교적 편안하였다. 그것은 제3단계까지의 심사 결과 신분을 확인한 후에 기본적으로 안전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심문은 끝난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명대에 중국에 표착한 조선 표류민들의 진술을 통해서 우리들은 표류민에 대한 收押과 解送과 審問을 하는 것은 備倭官이 담당하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崔溥의 표해록에서 서술한 상황은 명대에 備倭官의 실제적인 설치상황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밖에 명대에 발생한 두 건의 제주 표류사건에 관한 기록에서도 이런 사실은 충분히 증명된다.

첫째로 조선의 弘文館 直提學인 金宗直이 명대 成化 18년(1482년)에 중국에 표착했던 旌義 縣監 李暹의 구술에 따라서 쓴 『李暹行錄』의 내용이다.¹⁰⁾

李暹이 처음에는 해안 방위를 담당하였던 千戶인 桑鎧에게 구금당하여 심문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長沙鎮의 巡檢(所급에 상당한 군사 기관)인 聶揚에게 다시 심문을 받았다. 그리고 掘港의 指揮所(衛급에 상당한 군사 기관)에 압송한 후에 蘇州에 주둔하였던 總兵官인 郭銃한테 직접 다시 심문을 받은 다음에 楊州의 指揮僉事處(省급에 상당한 군사 기관)에 압송되어 또 다시 심문을 받았다. 이런 절차는 崔溥의 기록에 備倭官이 담당하였다는 제1단계 - 제3단계의 심문 과정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지방의 행정 수반과 관계된 더 자세한 상급기관의 심사여부는 원본의 후반 부분이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10) “暹等初泊長沙鎮，海邊有千戶桑鎧者，領卒押暹等，反接而行。初宿長沙鎮 … 行二日，到掘港指揮所，桑鎧等持供狀，示暹曰 … 總兵官郭銃，自蘇州到掘港，書以問暹 … 又行二日，到楊州，指揮僉事劉胤等，書以問暹 …” (『成宗實錄』 권157, 성종 14년 8월 壬午).

둘째로 1471년에 浙江에 표착한 金杯廻의 구술 내용도 崔溥의 서술과 일치한다.

“(김배희 등을 데리고) ... 어느 小官人에게 갔는데, 대포를 쏜 뒤에 우리들을 만나보았고, 5-6명으로 하여금 大官人에게 압송하게 하였는데, 앞에서와 같이 하였습니다. ... 다음날 사람을 시켜 어느 老闖에게 압송하였는데, 김배희 등의 사항을 자세히 물어 보고 나서...”¹¹⁾

여기서의 小官人은 바로 연해를 수위하고 있었던 百戶나 千戶였으며, 大官人은 바로 衛級의 지휘관이었으며, 老闖은 명대에 보편적으로 각 지방에 파견하여 주둔하고 있었던 鎮守인 太監이었다.

이렇게 신분과 경력이 다른 조선 표류민의 기록은 심사 절차와 주관기관에 대한 서술이 모두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명대에 표류민에 대한 조사과정과 주관 기관은 이미 제도화되었으며 적어도 그 定例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2) 표류민에 대한 衣食 공급과 주관기관

金杯廻와 李暹의 기록에서는 생활비의 지급기관은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충분한 음식을 제공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金紀孫의 『漂流錄』에도 음식 공급에 대해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

“회안위에 육사가 있었는데, 육사에서 우리들을 살펴보는 일을 끝내자 우리를 사창에 머물러 있게 하였습니다. 세 끼니를 먹여 주는 일을 거르지 않았는데, 한 끼니마다 한 사람에게 쌀 2되, 돼지고기 1근, 간장, 식초, 생강, 마늘이 모두 들어 있었습

11) “...至一小官人處, 放火炮後見之, 使五六人押送大官人處, 亦如之. ...翌日, 使人押送一老闖處, 問某等根脚...” (김봉옥·김지홍, 『옛 제주인의 표해록』, 전국문화원연합 제주도지회, 2001, 269쪽).

니다.”¹²⁾

명대 王在晉의 『越鑄』에서 浙江 台州에 표착한 조선 어민인 李大 일행에 공급한 일상 음식의 표준과 경비의 지급처도 제시되어 있다.

“사용하지 않는 장소를 선택하고 사람을 파견해서 간수하면서 安養하였다. 날마다 은과 쌀을 주었고 그들은 스스로 물을 사용해서 취사를 하게 되었다. 그들은 먹지는 야채와 고기와 쌀과 소금 등이 중국과 마찬가지로였다. 그런데 모두 잘 먹고 쌀이 부족해서 배불리 먹지 못하였다. 그래서 날마다 한 사람에게 쌀 1승 2합, 은 1분씩 나누어 주었다. 은과 쌀은 모두 역참에서 공급하였다.”¹³⁾

표류민 李大 일행 중에는 부녀와 아동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밥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고 비용도 주었다. 비용과 쌀은 모두 驛站에서 공급하였다. 崔溥의 『漂海錄』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있다.

“2월 초7일에 성명이 고벽이란 이가 역의 일들을 관장하고 있었는데, 신에게 와서 말하기를 ‘당신이 먹는 음식들은 조정에서 내려주는 것과 관련되므로 지출 경비의 숫자를 작성하고 문서가 부에 도착하는 데 1년을 기다려야 하오.’¹⁴⁾

위에 언급한 사료들을 통해서 각 지역에서 표류민에 공급한 음식 표준이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충분한 음식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착한 지역이 속한 성에서와 京師로 송치하는 도중에는 각 지역의 驛

12) “淮安衛中有六司，六司巡視俺等訖，留置于司倉，供饋三時不輟，一時每一人用二升米，豬肉一斤，醬醋姜蒜皆在焉…” (김봉옥·김지홍, 앞의 책, 344쪽).

13) “擇空閑處所著人看守安養，日給銀米，聽其自爲水爨，蓋食烹調蔬肉米鹽之類，與中國無異。而人人善嚼，生米不足充其腹，合無每人每日給米一升二合，銀一分，所用銀米查驛傳余銀給之…” (王在晉(明), 『雜記·朝鮮漁人』, 『越鑄』卷21, 中國社會科學院圖書館藏, 集104-490).

14) “二月初七日，有姓名顧壁者，掌驛中事者，來謂臣曰“你所食之物係是朝廷與的，作數支銷，待一年有文簿到部…” (최부, 앞의 책, 2월 초7일조).

站에서 供饋를 담당하였다는 것은 이미 명청시대에 표류민에 대한 공급의 정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상 음식 외에도 조선 표류민은 해난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대부분 입은 옷이 허름하였고 남루하였다. 게다가 중국에서의 체류시간이 길고 귀국의 노정이 멀어서 여러 계절을 거처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의복과 신발과 모자 등이 필요했는데 항상 이들 물품에 대한 공급과 증여를 받을 수 있었다. 金杯廻의 『漂流行記』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모두 각각 털모자, 푸른 무명, 첩리, 겹치마, 바지와 신발을 지급하여 주었습니다.”¹⁵⁾

김기순의 『漂流記』에도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6월 13일 형조가 감토 1개, 홉옷 1벌, 속옷 1벌, 베로 만든 띠 1개, 行膝과 버선이 서로 이어진 것 1개를 갖고 와서 주었습니다.”¹⁶⁾

그리고 台州에 표착한 李大 등 남녀 일행 7명은 날씨가 춥고 하천의 동결로 인해 배로 갈 수 없어서 다음 해 2월에 送還해야 했기 때문에 솜옷과 솜이불을 지급 받았다. 보통 백성들조차 이런 대우를 받았는데 한문에 능통하고 시문으로 서로 화답할 수 있는 관리들은 더욱 많은 우대를 받았다. 예를 들어 崔溥 일행이 경성에 도착한 후에 받았던 의복과 물건은 다음과 같다.

“흰모시 옷 1벌, 속이 붉은 비단으로 된 단령 1벌. 검은 녹색 비단 덧옷 1벌. 푸른 비단 누비옷 조끼 1벌, 가죽신 1켤레, 털버선 1켤레, 녹색 면포(무명) 2필”¹⁷⁾

15) “每人各給氈帽, 青綿布, 帖裏, 袂裙, 袴鞋…” (김봉옥·김지홍, 앞의 책, 269쪽).

16) “六月十三日, 刑曹官將甘吐一事, 單衣一件, 裙一件, 布帶一事, 行膝與襪相連者一件與之.” (김봉옥·김지홍, 앞의 책, 344쪽).

17) “素紵絲衣一套, 內紅緞子圓領一件, 黑綠緞子褶子一件, 青緞子裕濩一件, 鞵一雙, 氈襪一對, 綠綿布二匹.” (최부, 앞의 책, 4월 19일조).

강녕위의 진수 태감과 총병관은 최부에게 “복이 생겨나는 푸른색 단령 1벌, 흰색 여름철 포과 1건, 흰색 세 북 베적삼 1벌, 큰 털모자 1개, 작은 옷 1벌, 흰 사슴가죽 부추 1결레, 털벌신 각 1결레”를 주었습니다.¹⁸⁾

이를 통해서 최부 일행은 아주 좋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崔溥의 『漂海錄』에 기록된 兵部에서 禮部로 보낸 공문의 기록을 통해서도 증명된다.

“...예부가 최부 일행에게 갈아입을 옷을 헤아려 지급하고 본 병부에서는 최부에게 역참의 말을 응당 지급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탈 나귀와 식량을 지급하며, 차량을 주어 한데 짐을 꾸려 신게 하고, 해당 부서인 병부에서는 관리 1인을 뽑아 함께 보내어 귀국하는 길에 있는 군위들에서 헤아려 군인들을 뽑아 방호하도록 하여 요동에 이르면 진순관 등의 의견을 들어 각별히 통역관을 뽑아 조선의 경계로 보내 주도록 하라.”¹⁹⁾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京城에서의 표류민의衣食과 생활용품의 공급은 모두 다 禮部主客司와 會同館²⁰⁾이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京城을 떠난 후부터 遼東까지의 본국 송환과정은 모두 兵部가 담당하였다. 이렇게 보면 표류민 구조에 대한 각 기관의 책임이 이미 정례로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18) “並入朝謝恩. 到遼東後, 廣甯衛鎮守太監和總兵官又贈送 “生福靑圓領一件, 白夏布擺一件, 白三梭布衫一件, 大氈帽一頂, 小衣一件, 白鹿皮鞋一雙, 氈襪一雙” (최부, 앞의 책, 5월 19일조).

19) “...禮部, 量給替換衣服. 本部應付官崔溥站馬, 廩給余人脚力口糧, 通與車輛裝載行李, 及行該府差官一員伴送. 沿途軍衛, 量撥軍夫防護, 至遼東, 聽鎮巡等官另差通事人員, 送朝鮮地界...” (최부, 앞의 책, 4월 초7일조).

20) 중국 元, 明, 清代 외국 사신의 접견, 접대를 관할하던 관청.

3) 환자와 사망 표류민에 대한 처리

만약 救助地와 송환 도중에 표류민이 병에 걸리면 현지 관리가 의사를 초청해서 치료해 주었고 경성 체류 기간에는 일반적으로 禮部가 太醫院의 太醫를 파견해서 치료해 주었다. 예를 들어 보면 崔溥가 귀국 출발 2일 전에 갑자기 병세가 위중해졌다. 『표해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신이 4월 초5일부터 머리가 아픈 증상을 보이다가 17일에는 다소 나아져서 오늘까지 왔는데 갑작스럽게 가슴이 아프고 횡격막이 서로 어그러지며 손발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냉기가 온몸에 퍼지며, 잦은 기침이 목과 목구멍 사이에서 다급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하인 김중과 정보가 급히 예부 주객사에 알리자 회동관에 보고되고 또 예부에도 알려졌는데 즉각 태의원사 주민을 보내어 신의 병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 ‘항화 대기탕을 써야 치료할 수 있소’ … 또 인삼 양위탕을 달여 먹여 주었습니다. 신이 약을 먹은 이후에 몸이 점점 평온하고 화락해졌습니다.…”²¹⁾

이 기록을 통해서 보면 主客司와 會同館은 다 외교 접대를 담당하는 주관 기관이었다. 표류민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는 모두 禮部로 보고하였고 太醫를 파견하여 즉시 치료를 해주었다. 게다가 太醫는 “서둘러 太醫院에 가서 약을 지어온다”, 그리고 “직접 약을 달여서 신에게 먹였다.”²²⁾, “정성을 들여 치료해주었기 때문에 병상이 신속히 호전되어서 다음날에 바로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 등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병에 걸린 표류민이 충분한 의료조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崔溥 일행은 특별한 행운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를 수행한 43명의 일행 중 사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대부분 해난 사고를 당하였던 표류민 중 생

21) “臣自是月初五日得疾首之症，十七日向愈，至是日，卒得心痛，胸膈相戾，手足不仁，冷氣遍身，喘息危在喉咽間。”(所以，手下人金重，程保)“奔告于禮部主客司，會同館之報又至禮部，即差太醫院士朱旻來救臣病…用香火大氣湯治之…又煎人參養胃湯以飲之，臣服藥以後，體漸平和…”(최부, 앞의 책, 4월 22일조).

22) “疾走太醫院賣藥來，手自調煎以飲臣。”(최부, 앞의 책, 4월 22일조).

환한 사람은 극소수일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 사람들은 死地에서 살아난 후에도 극도로 몸이 피로하였고, 공포감에 시달렸다. 게다가 기후와 풍토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된 후나 송환 도중에 죽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崔溥의 屬吏인 程保가 말한 것처럼 “예로부터 표류하여 배가 혹 부서져 침몰하지 않으면 혹 마실 물이 없어지고 혹 물에 빠지고 혹 병으로 죽어, 죽는 이가 열 명 중 절반”²³⁾이었다. 따라서 죽은 표류민의 처리가 점차로 문제가 되었다. 표착한 후에 죽은 자에 대한 처리 규정이 처음에는 명확하지 않았고, 조선 측에서도 특별한 요구가 없어서 대체로 그 자리에 埋葬하였다.

『中宗實錄』의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의주 목사 이윤경의 서장에 말하기를, “표류인 40여 명 가운데 4명은 북경에서 죽었는데 당관의 말에 ‘시신은 옮겨 오지 못하고 각각 죽은 장소에 묻어 두었다.’ 하였습니다.”²⁴⁾

그러나 표류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본국까지 돌아가지 못하고 귀국 도중에 죽어버린 표류민의 屍體 처리에 대한 문제는 仁과 孝라는 儒家의 근본적인 道義와 국민에 대한 朝廷의 보호 문제와 결부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신중하게 대응해야 했다.

조선 中宗시대에 특히 표류 사건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조선 정부는 이 문제를 점차 중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주도의 표류인들 중 죽은 사람의 시체 송환 문제도 논의되었다.

『中宗實錄』 권98의 기록에 보면 아래의 내용이 보인다.

윤은보가 논하기를 “제주의 표류인들은 죽을 상황에서 살아나 곧 고국으로 돌아 오는데, 불행하게도 도중에서 병으로 죽은 자도 있습니다. 집에 있는 부모 처자들은

23) “自古漂流, 船或不敗, 或渴水, 或陷海, 或病死, 死者十居其半.” (최부, 앞의 책, 5월 19일조).

24) 義州牧使李潤慶書狀曰: “漂流人四十名內, 四名在北京身死, 唐官言內, 屍身不得輸來, 各於身死處埋置云.” (『中宗實錄』 권98, 중종 37년 6월 庚子).

그 당시 표류했던 자들이 모두 쇠환되어 온다는 말을 듣고는 서로 만나기를 밤낮으로 바라는데 마침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상심하고 애통한 마음이 배나 더할 것은 상정입니다. 이제 만약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고향에다 반장하면 비단 중국 사람들의 후한 풍속을 칭송할 뿐만 아니라 그 친속들도 조금은 위안이 될 것입니다.” 하고

…윤인경이 논하기를 “우리 나라 사람이 중국에 표류했다가 중도에서 병사했는데, 그의 처자가 영결도 못하고 또 고향에다 장사까지 못하게 된다면 비단 한 집안의 슬픔이 절통할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장례를 후하게 지내라고 하는 뜻에도 미진합니다. 경사에 갔다가 죽은 다른 사람의 예에 따라 호송해 와야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상(중종)이 전교하였다. “시체를 호송해 와야 한다. 북경에서 죽은 자는 예부에 알리고 요동에서 죽은 자 역시 그렇게 해야 한다.”²⁵⁾

이리하여 中宗 37년 이후 조선정부는 죽은 표류민의 유골에 대해 본국으로의 송환을 명확하게 요구하였다. 또한 中宗은 千秋使가 귀국할 때에 반드시 죽은 표류민의 유골을 가져오라는 명령을 내렸다.

“북경에서 죽은 4명의 시체는 반드시 그곳에 묻었을 것이니, 천추사가 돌아올 때 메어 오는 일을 예조에 말하라.”²⁶⁾

- 25) 尹殷輔議: “濟州漂流人等, 在死而生, 將還舊土, 不幸中路病斃. 在家父母妻子, 聞一時漂流者, 皆得刷還, 庶幾相見, 日夜希冀, 而卒未也, 其爲傷痛, 實倍常情. 今若將其形骸, 返葬故里, 則非徒上國人, 稱其厚風, 各其親屬, 亦可稍慰其心. …尹仁鏡議: “我國人漂到上國地方, 適中路病死, 其妻子既不得永(決)訣, 又不得歸葬故土, 不惟一家傷痛迫切, 國家歸厚之意, 亦未盡也. 依他赴京身死人例, 護來爲當.” 傳曰: “骨殖可護來也. 死於北京者, 告于禮部, 死於遼東者, 亦如是也.” (『中宗實錄』 권98, 중종 37년 6월 癸巳).
- 26) “漂民四人, 死於北京者, 必埋于其處. 千秋使回還時昇來事, 言于禮曹.” (『中宗實錄』 권98, 중종 37년 6월 庚子).

4) 표류민의 송환

(1) 송환 절차와 담당 기관

표류민의 신분을 일단 확인하였으면 그들에 대한 송환 절차를 바로 시작하였다. 먼저 표착한 지역을 출발해서 순서대로 등급에 따라서 경사로 보냈다. 경사에 도착한 후에 일반적으로 會同館에의 입주를 안배하였고 송환할 기회를 기다리게 했다.

조선 표류민에 대한 송환 방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조선은 다른 藩屬國에 비해 중국과 매우 긴밀한 관계와 빈번한 사절교류가 있어서 貢使가 왔을 때 함께 귀국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였다. 동시에 貢使를 통해서 표류민의 신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표류민은 가족과 소식이 단절되어 있었고 생사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러한 기분을 고려해서 또한 직접 사람을 파견해서 육로로 중국과 조선의 국경까지 호송하였고 조선 정부에 송환하였다.

전자의 예로는 李暹이 바로 千秋使인 朴健을 따라서 귀국한 경우이며 후자의 예로는 崔溥가 아버지의 별세 소식을 듣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해난을 당한 후 가족들을 근심해서 조금도 체류하고 싶지 않아 병든 몸으로 귀로에 올랐던 경우를 들 수 있다.²⁷⁾ 후자의 송환절차를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崔溥가 『漂海錄』에 抄錄한 병부의 공문서를 참고할 수 있다.

“좌군 도독부가 관할하는 바다와 상관한 일임. 좌군 도독부의 경력사가 공문을 올려 보냅니다. 병부의 직방청리사 수본을 받았는데, 삼가 병부에서 함께 보낸 병부의 제본(황제께 아뢴 공문)과 병부의 직방청리사가 (병부로) 올려 보낸 공문들을 받들고, (또) 병부에서 진을 지키는 절강사 설감 태감 장경이 공문으로 보낸 내용을 등사하여 내부로 보낸 내용을 받들고 (살펴보니) 앞의 일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병부에서 관원 1명을 뽑아 최부 등과 함께 보내서 도중에 있는 군사 기지에서 군인들을

27) “我奔初喪, 漂寄他國, 情理甚切. 一日之過, 實同三秋, 昨者病今日少愈, 車上臥在, 可以去矣, 請行.” (최부, 앞의 책, 4월 23일조).

뽑아 방호하게 하고, 요동에 이르면 진순관등의 의견을 들어 각별히 통역관을 뽑아 조선 국경까지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되돌아가게 하였습니다.”²⁸⁾

위의 공문서를 보면 명대 표류민에 대한 송환은 여전히 병부의 左軍都督府가 담당하였고 이 府에 파견한 差官이 호송하여 “도중에 軍衛가 軍夫를 파견해서 방호하였다(沿途軍衛量 撥軍夫防護).” 遼東에 도착한 후에는 遼東을 지키는 관리가 담당하였고 通事人員을 파견해서 조선 경계 지역까지 보냈다. 청대에는 예부가 通事 한 명을 파견해서 반송하였고 驛遞의 방법으로 조선에 송환하였다. 일반적으로 표류민을 송환할 때 조선에 인계한 지역은 국경선이었다. 그러나 예외의 상황도 있었다.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에 의하면 中宗 37년 6월과 8월에 각각 遼東鎮撫인 李時와 康鎮²⁹⁾ 그리고 遼東鎮撫인 宋琛과 百戶인 吳璧³⁰⁾ 등이 표류민을 압송해서 義州의 경계선이 되는 하천을 건너서 직접 王京에 송환한 경우도 있었다. 그 목적은 주로 조선의 은상과 재물을 獲得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주의해야 하는 다른 상황은 琉球와 安南에 표착한 조선 표류민들의 경우도 일반적으로는 먼저 중국에 보내고 그곳으로부터 조선에 송환한 것이었다. 전자가 <표 1>의 가정 24년(嘉靖 24年, 1545년)에 冬至使를 따라서 귀국하였던 제주 표류민 朴孫 등 12명은 바로 琉球에 표착한 후에 중국을 경유해서 송환된 경우이다.

28) “左軍都督府爲海洋聲息事，該經歷司案呈，准兵部職方清吏司手本，走本部連送。該本部題，該本司案呈，奉本部送于內部，抄出鎮守浙江司設監太監張慶題前事。轉行該府差官一員伴送。沿途軍衛量撥軍夫防護，至遼東，聽鎮巡等官，另差通事人員，送至朝鮮地界，令其自行回還。” (최부, 앞의 책, 4월 21일조).

29) “平安道觀察使閔仁齊狀啓，漂流人押領唐官李時，康鎮等，欲直到王京云，傳曰：“擇其朝中秩高人員，今日內發遣護來。”(『中宗實錄』 권98, 중종 37년 6월 癸巳).

30) “遼東鎮撫宋琛，百戶吳璧等，濟州漂流人李介叱同等二十一名押率，出向本國。”(『中宗實錄』 권98, 중종 37년 8월 丙申).

(2) 송환 노선

조선 표류민들은 대체로 육로를 통해서 송환되었다. 특히 이는 조선의 조공 노선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사실 명대 초기에는 北元이 遼東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여전하여서 육로의 통로를 위협하였기 때문에 양국의 교류는 海路를 위주로 하였다. 즉 長江 입구에 위치한 太倉港에서 黃海를 횡단하였고 조선의 禮成江 입구를 경유해서 開京(지금의 개성)으로 들어왔다. (당시 한국의 상황은 고려왕조였다). 洪武 2년 4월에 조선 표류민 165명은 바로 해로를 통해서 송환되었다. 그러나 洪師範과 鄭夢周의 해난이 발생한 후인 洪武 7년(1374년) 이후부터 조선의 貢使는 渤海로부터 登州에 상륙해서 경사로 가는 길로 바뀌었다. 永樂 19년(1421년)까지 명나라 북경으로 遷都 후에 貢使가 모두 遼東의 驛路로 왕복하였으니 표류민에 대한 송환 노선도 이와 같았다.³¹⁾

그러나 표류 난파선의 파손이 그다지 크지 않아서 수리한 후에 항해할 수 있으면 중국 정부는 수리에 도움을 주었고, 보급을 준 후에 스스로 귀국하게 하였다. 弘治 원년에 해난 사고를 당해서 山東반도의 登萊지역에 상륙한 조선 표류민들의 경우 바로 상급기관에 통보한 후에 직접 해로로 송환하였다.³²⁾

다시 제주 어부인 李大 일행의 예로 보자. 절감 官府가 그들에게 귀국 방법을 물어 봤을 때도 해로로의 송환 여부를 우선 고려하였고, 표류민이 단호히 해로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을 때 비로소 육로로의 송환 방식이 선택되었다.³³⁾

이로 보아 송환 노선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는 비교적 유연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해로를 통한 송환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렇게 보면 그 당시의 중국정부는 외국에 표착한 후 중국을 경유해서 송환해야 하는 표류민들을 반드시 육로로 송환하는 것만을 고집하지 않았고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처리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표류민이 고향을 그리워

31) 『通文館志』, 서울大學校 奎章閣韓國學研究院, 2006, 154-155쪽.

32) 『明實錄·孝宗實錄』卷18, 弘治 元年 九月 癸亥.

33) 王在晉(明), 『越鐫』, 卷21 雜記 朝鮮漁人, 中國社會科學院圖書館藏, 明萬曆三十九年刻本.

하는 마음을 고려한 배려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비용과 복잡한 正規의 송환 절차를 고집하지 않음으로써 비용과 인원을 절약하는 방편이기도 했던 것이다.



〈도 1〉 조선시대 주요 표류민들의 표류여정 및 송환 노선³⁴⁾

34) 제주사랑역사교사모임 엮음, 『청소년을 위한 제주역사』, 각 출판사, 2009, 100쪽.

4. 맺음말

湯熙勇은 명대의 표류민 처리방법에 대해 “사건별로 처리하였으며 清代의 康熙 乾隆代에 와서 비로소 표류민에 대한 구조제도가 점차 형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국 봉건 왕조 시대에는 정례를 통해서 고정돼 왔던 방법을 제도로 간주할 수 있고, 서양식 관점으로 전문적인 법령과 제도를 형성했는지의 여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³⁵⁾ 왜냐하면 만약 湯熙勇의 주장에 따르면 청조 말기 이전 표류민의 구조는 사안에 따라 그때그때 황제의 勅令에 따라서 시행했던 것에 불과할 뿐이다. 몇 가지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응했던 條文이 있었지만, 결코 완비된 제도적인 문서가 아니다. 1876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福建의 巡撫인 丁日昌이 『保護中外船隻遭風遇險章程』³⁶⁾을 제정해야 현대 의미에서의 구조제도를 창립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앞서 서술한 것처럼 명대에 이미 표류민에 대한 조사 절차는 제도화되었으며 적어도 그 定例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명대기록에 표류민에 관한 기사가 다수 확인된다고 하여 그 이전 시기, 가령 송대에 표류민에 대한 조사 절차와 송환제도가 없지는 않았다. 다만 해상교통의 빈도수가 명대에 더 높아지면서 표류도 그만큼 많아졌을 것이다.

험난하고 예측할 수 없는 해양은 언제나 인류의 해상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인류의 역사에서 해난사고는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는데 동시에 뜻밖의 기쁨을 가져오기도 한다. 해난사고가 당사자에게는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이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류 기록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조선인의 시각으로 明·淸시기 동아시아 각국

35) 사실 “전문적인 법령과 제도를 형성했는지의 여부”만을 가지고 법령과 제도의 성립을 판단하지 않는다. 서양에서도 판례법(判例法, Case Law)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법률 제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다.

36) 湯熙勇, 『近代東亞海域의海難救助及爭議-以台灣的外籍船難與救助爲中心』, 『中國海洋發展史論文集』第七輯, 臺北中央研究院社科所出版, 1999, 13쪽.

의 사회상을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동아시아 각국 간 군사·정치·외교관계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본고는 조선의 표해록을 통해서 명나라의 조선 표류민에 대한 구조방법, 조사절차, 주관기관 등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난파선의 화물 처리 등 표해록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그 고찰의 대상을 구조방법, 조사절차, 주관기관 등으로 제한하였다.

표해록을 통해서 본 신문 절차와 주관기관은 명대 이전에도 실시되었으나 명대에 이르러 보다 분명하게 제도화되었으며 적어도 그 定例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류민 심문을 주관한 기관은 주로 備倭機關이고 심문관의 등급도 높고 이것을 통해서 명대의 엄준한 왜구 방위형세를 알 수 있다. 중국 封建王朝 시대에는 정례를 통해서 고정되어 온 방법을 제도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서양식 관점으로 전문적인 법령과 제도를 형성했는지의 여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것도 人治爲本人治를 근본으로 한다)이라는 동방 封建王朝가 국가를 관리하는 데에 항상 따르는 원칙이다.

조선의 문신이었던 崔溥는 해난을 당해 중국에 표착한 후 자신에게 다가올 禍와 福을 예측할 수 없었지만 중국의 상황을 자발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그의 표해록은 일기체로 작성되었는데, 이런 정밀한 내용은 귀국 후의 기억으로는 절대 작성할 수 없는 내용이다. 표해록의 내용을 보면 그가 중국에 표착했을 당시부터 날마다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국 관아의 중요한 공문을 자세히 초록하였기 때문에 당시 중국의 사회상황, 관료제도, 진기한 풍토 등을 담고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다른 표류민들은 崔溥처럼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는 없었지만 조선 조정은 표류민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고 그들의 진술을 토대로 표류민의 行錄을 작성함으로써 중국 상황을 이해하는 좋은 자료로 삼았다. 이런 자료들은 『朝鮮王朝實錄』, 『通文館志』, 『備邊司臚錄』의 『問情別單』 등 문서에 분산되어 나타난다. 우리는 이들 자료에 포

함된 풍부한 역사적, 문화적 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발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표해록, 해난 구조, 심문 절차, 의식 공급, 주관 기관, 송환 노선, 제도화

■ 참고문헌

1. 사료

『朝鮮王朝實錄』

『朝鮮備邊司謄錄』, 國史編纂委員會, 2007.

『通文館志』 卷三, 서울대학교 奎章閣韓國學研究院, 2006.

고창석 외 역, 『濟州啓錄』, 서귀포시고서총람 번역 1권, 1995.

權時亨, 『石湍燕記』, 林基中主編, 『燕行錄全集』, 東國大學校出版部, 2001.

김봉옥·김지홍, 『옛 제주인의 표해록』, 전국문화원연합 제주도지회, 2001.

김지홍 역, 장한철, 『표해록』, 지만지, 2009.

崔 溥, 서인범·주성지 옮김, 『표해록』, 한길사, 2004.

최두찬·박동욱, 『승사록, 조선 선비의 중국 강남 표류기』, Humanist 출판사, 2011.

申時行(明), 趙用賢(明)等, 『明會典』,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編, 上海古籍出版社, 1995.

『明史·職官志』, 摛藻堂四庫全書薈要, 浙江大學圖書館藏.

鄭昌順等, 『同文會考』, 吉林文史出版社, 2005.

鄭若曾(明), 『籌海圖編』, 『中國兵書集成』(15-16冊), 解放軍出版社·遼沈書社聯合出版, 1990.

範中義(明), 『籌海圖編淺說』, 解放軍出版社, 1987.

張 瀚(明), 『松窓夢語』, 『元明史料筆記叢刊』, 中華書局, 1997.

王在晉(明),『越鐫』,中國社會科學院圖書館藏,明萬曆三十九年刻本。

_____,『海防纂要』,江蘇揚州古舊書店,1957.

2. 저서 및 논문

高昌錫,『濟州啓錄』에 나타난 濟州漂到人의 實態,『耽羅文化』,제13호,1994.

劉序楓,『清代中國對外國遭風難民的救助及遣返制度-以朝鮮,琉球,日本難民爲例』,『第八回琉中曆史關係國際學術會議論文集』,2001.

劉序楓,『近世東亞海域的偽裝漂流事件-以道光年間朝鮮高閑祿的漂流中國事例爲中心』,『韓國學論集』,漢陽大學校韓國學研究所,第45輯,2009.

劉菁華·許清玉·胡顯慧選編,『明實錄朝鮮資料輯要』,巴蜀書社,2005.

李雲泉,『明清朝貢制度研究』,暨南大學博士論文,2003.

박원호,『崔溥漂海錄研究』,고려대학교출판부,2006.

潘允洪,『朝鮮時代備邊司研究』,景仁文化社,2003.

松浦章,『明清時代中國與朝鮮的交流-朝鮮使節與漂着船』,樂學書局,2002.

吳海霞,『海難救助報酬原則的探討和評析』,『浙江國際海運職業技術學院學報』,2008.

王力軍,『宋代明州與高麗』,科學出版社,2011.

제주사랑역사교사모임,『청소년을 위한 제주 역사』,각 출판사,2009.

주강현,『제주기행』,웅진지식하우스,2011.

湯熙勇,『近代東亞海域的海難救助及爭議-以台灣的外籍船難與救助爲中心』,『中國海洋發展史論文集·第七輯』,臺北中央研究院社科所,1999.

_____,『清順治乾隆時期中國救助朝鮮海難船及漂流民的方法』,『中國海洋發展史論文集·第八輯』,臺北中研院社科所,2002.

The Salvage system of Ming Dynasty on Korean castaways

– As the center of Jeju castaways who arrived in China –

Wang, Tian-Quan

(Professor,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 Culture,
Jeju International University)

Drifting is a special communication channel between China and Korea in Ancient. Korea has left a large number of Crusoe which was written by castaways or according to the castaways record.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mainly about the way of salvation and the rescue process and department of the Ming Dynasty of Korean castaways through the Korean castaways records and relevant documents.

In most schooler's opinions, the system of Salvage was established only by the middle of Qing Dynasty. The author of this thesis holds different opinions. The content of Crusoe and relevant documents demonstrated that in the Ming Dynasty, China had formed a system of salvage or statute to foreigners.

By the accounts of different castaways and relevant documents, we can confirm this point. The sign is formed more normative salvage process and clear in every link of the specific department responsible for rescue, and formed a rule-based statute. The system of salvage which was established by the Ming Dynasty was basically inherited and developed by the Qing Dynasty.

At the same time, this study also tries to show through historical reconstruction, the complex bilateral relations and deep cultural psychology behind the salvage system. As

a suzerain state, the Ming Dynasty rescued the castaways of his vassal states, not only because of the humanitarian spirit, but also stretch of conciliatory policy, to maintain the loyalty and gratitude of Korea to the Ming Dynasty. And this is also a special channel to display the national soft power. This is the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the salvage of the Ming Dynasty and modern salvage.

[Key Word]

salvage system, castaway Crusoe, rescue process and department, return route, institutionalization



논문투고일 : 2012년 9월 30일 / 논문수정일 : 2012년 11월 15일 / 게재확정일 : 2012년 11월 20일